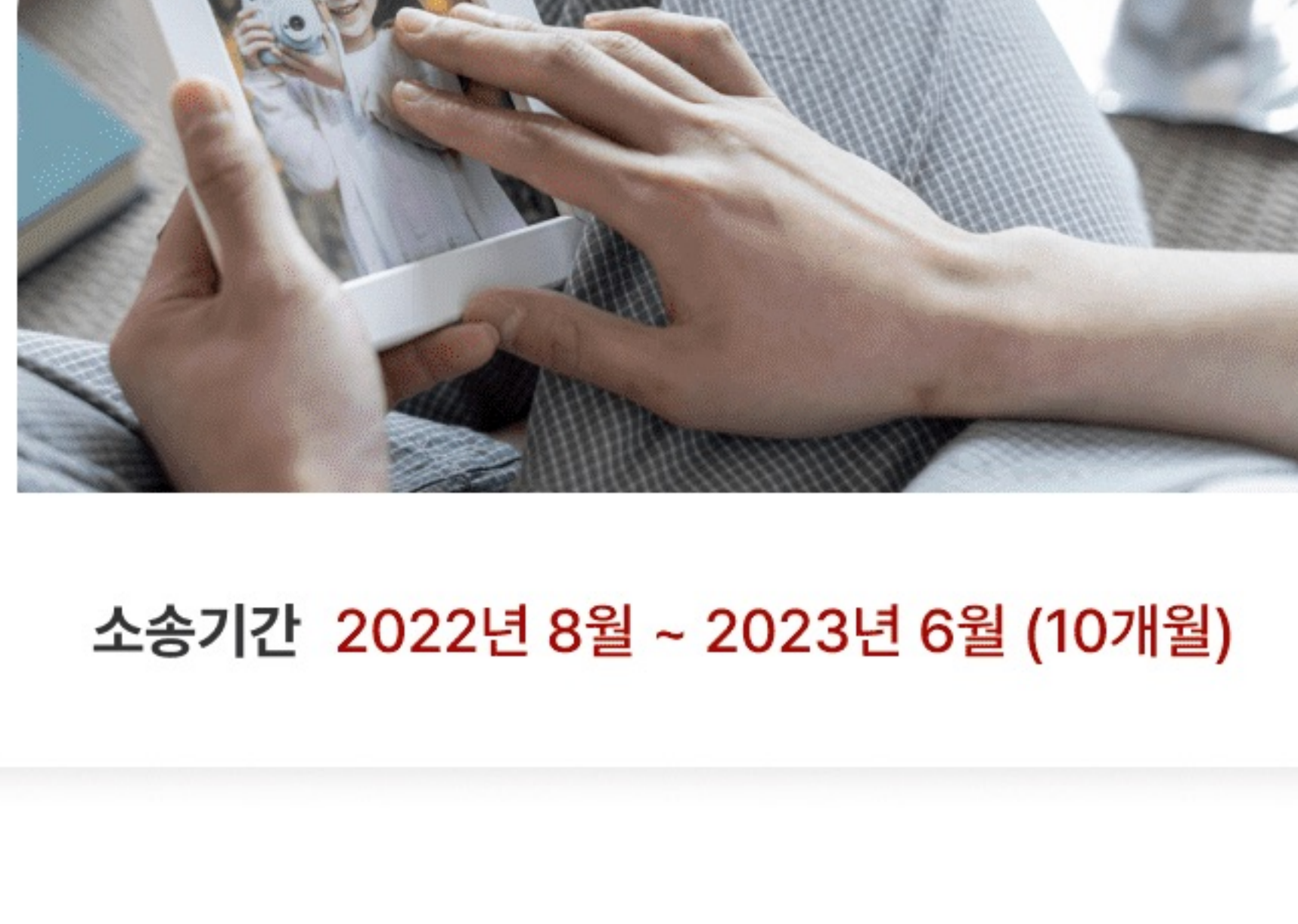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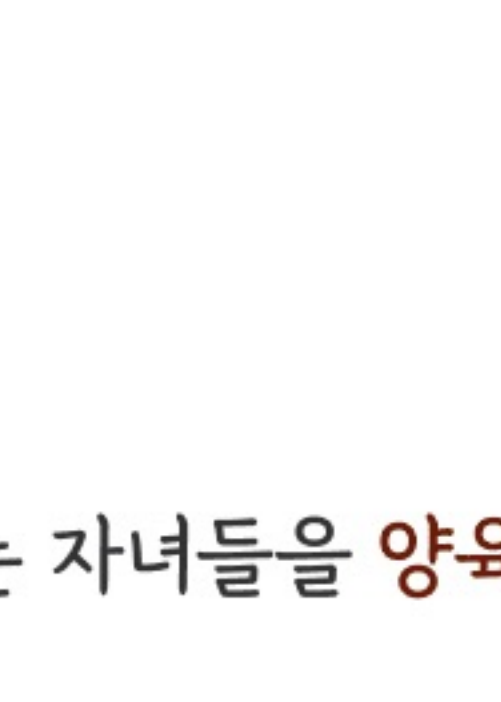


양육비 증액에 성공하였습니다!

# 양육비 변경



소송기간 2022년 8월 ~ 2023년 6월 (10개월)



## 양육비 변경

"월 10만 원으로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버겁습니다."

“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지역 : 천안  
협의이혼  
미성년자녀 수 : 2명  
관할법원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양육비 변경, 협의이혼 후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 성공하였습니다.



### 청구 사유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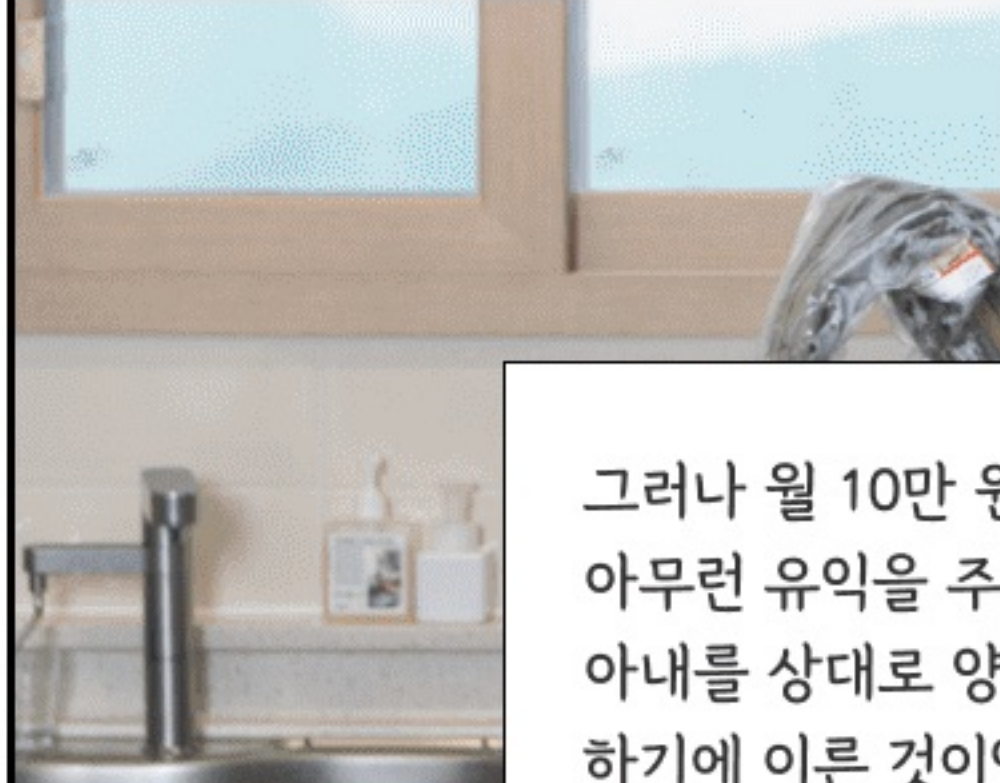
그러나 월 10만 원으로는 자녀들의 복리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기에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셨습니다.

## STORY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매달 자녀 1인당 양육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월 10만 원으로는 자녀들의 복리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사건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셨습니다.

## PROCESS



법무법인대세 방문·상담



전담팀 배정



소송제기

### 1 사건수임

의뢰인은 홀로 3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이후 사건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법무법인 대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2 사건검토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 이혼 당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매달 자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월 10만 원으로는 자녀들의 복리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 3 소송제기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즉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통하여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과거로부터 양육비를 불성실하게 미지급해온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만한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의뢰인의 이의로 인해 조정외 불성립 되었습니다. 박천사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4 사건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녀들이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1인당 월 30만 원, 중학교 졸업 때까지는 1인당 월 50만 원,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1인당 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 내렸습니다.

## RESULT

대세  
법무법인대세

### 양육비 증액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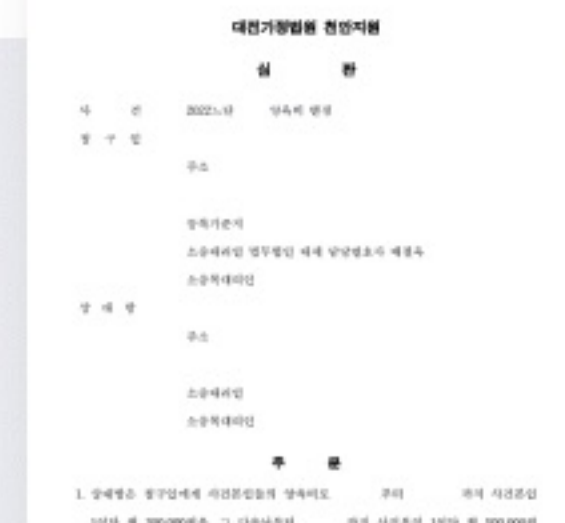
- 이혼
- 이혼소송 위자료
- 초등학교 졸업까지 ..... 1인당 월 30만 원
- 중학교 졸업까지 ..... 1인당 월 50만 원
- 고등학교 졸업까지 ..... 1인당 월 65만 원

법원은 원만한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의뢰인의 이의로 인해 조정외 불성립 되었습니다. 이후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KEY POINT

합당한 이유와 증거 없이 무조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홀로 이를 진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거쳐 자녀의 양육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세  
법무법인대세  
Copyright © 법무법인 대세